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제54차 농정시장작업반(APM) 및 제65차 농업무역
합동작업반(JWPAT) 회의 참석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최수아 사무관
OECD 대표부 한동민 과장(현지참석)

3. 출장일정

일 시	장소	내용	비고
5월 29일(일)	인천→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5월 30일(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2박 2일
5월 31일(화)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3박 3일
6월 1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회의참석	4박 4일
6월2일(목)~3일(금), 13:30	파리→인천	귀국	4박 6일

4. OECD 제54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의제목록

의제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논의단계
Item 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TAD/CA/APM/WP(2011)10 TAD/CA/APM/WP(2011)11 TAD/CA/APM/WP(2011)11/ANN1	Discussion prior to declassification
Item 4	Report on the 16-18 May 2011 World Outlook Conference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5	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cs		
Item 5.a	Executive Summary	TAD/CA/APM/WP(2011)12	Declassification
Item 5.b	Part I	TAD/CA/APM/WP(2011)13	
Item 5.c	Part II -Country Chapter	TAD/CA/APM/WP(2011)14	Discussion prior to declassification
Item 5.d	Part III-Additional Tables on Estimates of Support to Agriculture	TAD/CA/APM/WP(2011)15	
Item 5.e	Special 50th Anniversary Chapter on Agriculture at OECD	TAD/CA/APM/WP(2011)21	Discussion prior to declassification
Item 6	Measuring support along the agricultural supply chain: Scoping paper	TAD/CA/APM/WP(2011)16	Guidance
Item 7	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ynthesis report	TAD/CA/APM/WP(2011)3/REV1	Declassification
Item 8	Agricultural policy choices in developing countries		
Item 8.a	Modelling the distributional implications of agricultural policies in developing countries-the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Model(DEVPED)	TAD/CA/APM/WP(2010)43/REV1	Declassification
Item 8.b	The Development Policy Evaluation Model(DEVPED): Technical Documentation	TAD/CA/APM/WP(2011)22	Discussion
Item 8.c	Synthesis report	TAD/CA/APM/WP(2010)41/REV1	Declassification
Item 9	Global food security: Scoping paper	TAD/CA/APM/WP(2011)17	Guidance
Item 10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in agriculture: The rol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AD/CA/APM/WP(2011)18	Declassification
Item 11	Innovation system: Scoping paper	TAD/CA/APM/WP(2011)19	Guidance
Item 12.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Have agricultural markets become thinner? Draft report	TAD/CA/APM/WP(2011)20	Discussion
Item 13	Report of the seventh meeting of the OECD Network for Farm Level Analysis	TAD/CA/APM/WP/RD(2011)1	Information
Item 14	Update on the MAFAP project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5	Update on G20 and Commodity Price Volatility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6	OECD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Item 16.a	Indonesia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6.b	Kazakhstan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7	Other business		
Item 17.a	OECD Workshop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in Indonesian Agriculture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7.b	Update on OECD work on Agriculture and Water	Oral report	Information
Item 17.c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Room document	

5. OECD 제65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 회의 의제목록

의제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논의단계
Item 3	Best practice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ood-import related regulations - Experiences from some regional trade agreements: Progress report	TAD/TC/CA/WP(2011)1	Information
Item 4	Long-term scenarios for agrofood	Oral update	Information
Item 5	Scoping paper on export restrictions	TAD/TC/CA/WP(2011)2	Discussion
Item 6	Other business	Oral presentation	Information

6. OECD 제4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결과

□ 핵심요지

- OECD-FAO 2011~2020년 농업전망(연례보고서): FAO와 공동으로 공개 예정
 - 단기적으로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생산증가 속도가 느리고 적정 재고수준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이전 평균치에 비해 향후 10년간 실질가격 기준으로 곡물은 약 20%, 육류는 약 50%의 가격상승을 전망하는 내용임.
 - 농산물 시장의 협소성(thinness) 및 가격변동성 영향요인에 대한 기술내용을 두고 회원국들의 의견차이가 있었음. 사무국은 회원국 의견을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한 후, 사무총장 책임하의 보고서로서 FAO와 공동으로 오는 6.17일 배포될 예정임.
- 회원국 및 신흥국의 농업정책보고서: 공개하기로 결정
 - 회원국 및 5개 신흥국(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우크라이나)를 포함하는 농업정책점검 및 평가보고서임. 종합보고서(Part I)는 금번 합의된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위원회 책임하에, 국가별 보고서 및 부록(Part II, III)은 사무총장 책임하에 공개될 예정임.
 - 시장가격지지(MPS)의 성격(그래프 제목 포함)을 “most distorting support”라고 표현한 초안내용에 대해 이를 개관적인 문안으로 수정하자는 노르웨이·일본 등의 입장과 표현을 유지하자는 호주·캐나다 등간의 논쟁이 컸음(사무국은 표현 유지를 고수함). 막판 절충 끝에 “potentially most distorting support”라는 표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다만, 호주·영국은 이에 유감을 표시). 이외에도 수출제한조치, 농업리스크에 대한 국가개입분야 등의 문안표현에 대해 회원국

간 이견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직불제 관련 표현 등 사실과 관련된 표현의 수정을 요청하였음(별첨).

○ 연구계획서에 대한 토론

- 공급체인을 포괄하는 PSE 측정방안 작업계획서: 작업목적 불명확 등 PSE에 대한 근본적인 논란, 작업범위 과다, 자료확보 곤란 등에 대해 의견이 많았음. 사무국은 PSE 범위를 확대할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금번 토론 내용을 반영하여 1~2개 국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pilot)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함.
- 국제식량안보 작업계획서: 시장 이외의 요소 등 식량안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일본, EC, 노르웨이), FA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의견 등이 제기됨. 사무국은 회원국 의견을 반영하여 문헌조사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답변함. 연구범위를 경제적 측면으로 국한할 지의 여부는 회원국들의 추후 서면의견을 더 검토할 예정

□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에서는 농업위 연례보고서인 2011-2020 농업전망, 회원국 농업정책보고서 등 비중 있는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농업정책에 대한 일부 문안 표현을 두고 농산품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상당한 입장차이가 많았음.

-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역의 역할, 정부의 정책적 개입 필요성과 지원분야” 등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표현수위와 뉘앙스를 두고 상당히 첨예한 논쟁이 전개되었음.

※ 농식품 녹색성장전략보고서(사무국 책임하의 잠정보고서로 발간)의 경우에도 무역의 역할에 대한 표현수위를 두고 회원국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

○ 우리나라는 일본·노르웨이·스위스 등과 함께 수입국 공조모임을 통해 협조하고 있는 바(금번에 아국이 모임을 주관), 근본적인 이슈에 대한 표현 논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협조체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우리나라는 농업부문 공급 체인 보조 측정방안, 국제 식량안보 연구계획 등 분야에서 연구방향 설정에 많은 기여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농업정책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사실관계 수정의견을 제출하였는 바, 사무국 수정 여부를 공개 이전에 확인할 필요(국가별 보고서는 사무총장 책임하에 공개)

<의제별 주요내용>

□ Item 3. OECD-FAO 농업전망 2011-2020 (The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 OECD 사무국은 FAO와 공동으로 향후 10년(2011-2020) 기간 동안의 세계 농업 부문의 추세를 전망하였다. 올해부터 수산부문에 대한 전망을 포함하고 있는 전망보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번째 부분[TAD/CA/APM/WP(2011)10]은 농업전망결과에 대한 개괄적 요약과 함께 가격변동성(price volatility)의 요인별 영향을 계측정하였고, 두번째 부분[TAD/CA/APM/WP(2011)11]은 바이오 연료, 곡물, 유지류, 당류, 육류, 낙농제품 등과 같은 개별상품시장에 있어서 생산, 소비, 무역,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음.
- 회원국들은 수산부문을 새롭게 포함한 점과 가격변동성의 요인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담고 있는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세부적인 보완·수정을 거쳐 농업전망 보고서의 공개(declassification)를 승인하였음.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일본
 - 올해 초 일본의 쓰나미·지진 피해 관련 내용을 전망보고서에 포함한 것에 사의를 표하고, 관련 정보의 업데이트 통계를 제공하기로 함.
- 프랑스
 -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기상조건이나 생산량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것은 다양한 다른 변수(거시환경이나 정책변수)들을 적절하게 모형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음. 특히 바이오연료의 수급 및 관련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함.
 - 위험의 불확실성과 가격변동성의 관계를 국가별 위험관리체계의 차이나 농가

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 있음. 즉, 해당국가의 위험관리체계의 수준이나 농가의 규모에 따라 위험으로 인한 피해, 위험 대응 방식이나 수단이 다르다는 것을 반영하여야 함.

- 금융·산물 시장에서의 투기와 가격변동성의 관계 및 민간부문의 역할을 G20에서 다루고 있으며, 이 전망보고서에도 기술할 필요 있음.

○ 스위스

- 시장의 협소할수록 무역규제조치가 더 큰 가격조정을 유발한다고 기술한 para 67의 마지막 문장은 이번 APM에서 논의할 예정인 관련 작업(Have Agricultural Markets Become Thinner?, TAD/CA/APM/WP(2011)20)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리 결과를 예단하고 기술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 또는 제거해야 함.

○ EC

- 주요 곡물의 재고수준은 가격변동성과 불확실성의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가격변동 및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상호관계가 존재함. 식량위기 및 곡물가격 급변동의 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2006-08년 vs 2008-2010년)
- 거시 및 정책환경에 대한 가정에서 국가그룹들을 보다 세분화하고 분류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즉, Baseline 가정에는 OECD에 거시환경이 다른 동유럽국가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BRIC에 포함되지 않은 신흥경제국(Emerging countries)에 대한 별도의 가정도 고려해야 함.

○ 호주

- 지역별, 그룹별 생산량과 소비량을 나타낸 그림 1.9와 그림 1.11에서 지역 및 그룹의 분류기준이 애매하고 시각적으로도 쉽게 파악이 어려움.

○ 뉴질랜드

- 가격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확률적 분석에서, 단순한 경제성장 외에도 소득수준의 변화가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음.

○ 러시아

- 기본가정에서 환율과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결과 환율이나 물가 등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충격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변동효과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 캐나다

-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음. 이는 국제원유 가격과 바이오 연료 관련 정책들이 바이오 연료(에탄홀)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하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에너지 가격에 대한 Baseline의 가정이 적합한지와도 관련된다 고 판단됨.
- 수산부문의 소비량의 경우 사람이 소비하는 것 외에도 동물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수급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여겨짐.

○ 미국

- 캐나다와 유사한 내용, 너무 길어서 정확히 파악 못함

○ OECD 사무국

- 농산물시장의 협소성과 가격변동성에 관한 전망보고서의 기술은 이번 APM에서 논의할 예정인 [TAD/CA/APM/WP(2011)20] 보고서뿐만 아니라 ‘농산품시장의 구조변화’작업 분야의 전반적인 연구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생산량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각국의 농업정책, 그리고 다양한 외생변수들이 존재함. 전망모형에서는 모든 요인들을 반영하진 못했더라도 핵심적인 변수들은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기준으로 제시한 가정들이 변화함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G20 보고서와 OECD 전망보고서의 가격변동성에 대한 분석 부분은 연계되어 있지만, G20 보고서는 식량안보나 농업인 소득 및 복지 등의 정책권고에 초점을 맞춘 반면, OECD 전망보고서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작성되었다는 차이가 있음.
- AGLINK-COSIMO 모형과 수산 모형의 연계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

겠으며, 이번 전망보고서에서 수산부문의 소비량은 인간의 소비량에 초점을 두고 있음.

○ FAO

- 전반적인 전망결과는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농산물의 수요증가속도에 비해, 주요 농산물 생산국들의 생산량 증가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공급이 빨리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Item 5. OECD 회원국 및 신흥경제국의 농업정책(Agricultural Policies in OECD Countries and Emerging Economies, 2011)

- M&E(Monitoring and Evaluation) 보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는데, 첫째 부분[TAD/CA/APM/WP(2011)12]은 전반적인 농정평가를 요약한 문서(Executive Summary)이고, Part I [TAD/CA/APM/WP(2011)13]은 2010년 OECD 회원국의 구조적 다양성과 세계농업에서 신흥경제국의 변화하는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농업지지정책의 수준, 구성,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Part II [TAD/CA/APM/WP(2011)14, 15]에서는 19개 OECD 회원국 농정과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5개 신흥경제국에 대한 개별 농정검토를 다루고 있음.

- 각 회원국들은 자국의 농정에 대한 기술(세 번째 부분)에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Executive Summary와 Part I 에 대한 각국의 의견(수정·보완·삭제)을 개진하였음. 우리나라도 Part I 과 Part II에서 우리나라의 농정과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였음(붙임 참조).

- Part II에서 각국의 PSE 지표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제시됨)중에 가장 왜곡적인 지지수준(Most distorting support)이라는 명칭을 그래프에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에 일부 회원국들이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
 - 노르웨이는 ‘Most distorting support’이라는 표현 대신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인 ‘MPS and support for unconstrained variable input use’라는 구체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특히 작년 11월의 APM

당시 관련 논의에서 합의된 바 없고 공식적인 PSE 분류체계에도 없는 ‘Most distorting support’라는 표현이 가장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그래프에 제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음. 일본과 스위스가 노르웨이의 의견에 지지를 표명함.

- 이에 사무국은 ‘Most distorting support’이라는 표현을 농업위 산하 작업반의 여러 문서에서 이미 사용해왔던 것이며, 지난 11월의 APM에서도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대체로 확인했었던 사안이라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함. 단, 그래프에 ‘가장 왜곡적인 지지에는 시장가격지지(MPS)와 제약 조건이 없는 투입재보조가 해당된다’라는 각주를 추가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음. 호주와 캐나다가 사무국의 입장을 지지함.
- 노르웨이는 이에 반대하였으며, 그래프에는 ‘MPS and support for unconstrained variable input use’를, 각주에 ‘이는 Most distorting support로 분류되고 있다’로 표현하는 방안을 역제안함. EC, 프랑스, 영국 등이 다양한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두고 노르웨이와 사무국간의 대립은 풀리지 않았으며, Executive Summary와 Part I에서 제시된 ‘Most distorting support’ 표현에 대해서도 노르웨이는 과거 M&E 보고서에서도 사용한 바 있는 ‘Potentially most distorting support’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무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대응하였음.
- 결국, 이번 APM 회의가 종료되기 직전에야 Executive Summary와 Part I, Part II의 본문에는 ‘Potentially Most distorting support’로 기술하고, Part II의 그래프에는 ‘Most distorting support’로 표현하기로 합의되었음.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농정의 목표가 농가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농업소득에 대한 지원인지 여부
 - EC와 프랑스는 농정의 목표가 농가소득(farm households income)보다는 농업소득(farm income)의 합리적인 수준을 보장하는 것임. 프랑스도 같은 의견을 제시한 반면, 캐나다는 농외소득(off-farm income)의 증대 또한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훈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였음. 사무국은 농정목표로써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을 함께 기술훈하기로 하였음.
- 최근의 금융 및 경제위기 기간 동안 국가(농업)재정의 감소 여부

- EC는 최근의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각국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산지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기술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며, 독자들에게 회원국들의 생산자에 대한 지지수준이 그다지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연계되어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정·제거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음.
- 스페인과 프랑스도 OECD 국가들의 예산지출이 다소 안정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감소하지 않았다'로 표현하는 것은 '감소되어야 하는데 감소하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기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영국은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았다(has not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or increase)'라는 중립적 표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사무국은 이에 따라 수정하였고 회원국들도 동의하였음.

○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차이의 감소와 PSE 수준의 감소 관계

- 프랑스는 농산물의 국내 지지가격과 국제 기준가격 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은 높아진 국제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경우 환율의 변동도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지적함. 스페인도 유사한 의견을 개진함.
- 프랑스는 이러한 가격차의 축소는 농정변화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PSE가 감소하고 있는 장기적인 추세를 확인시켜주는 근거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보임.

○ 최근의 여건변화와 새로운 농정의 방향제시

- EC, 호주,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등은 새로운 농정방향을 요구하는 최근의 여건변화로 세계적인 농산물 수요증가, 가격상승, 자원의 한계 외에도 변동성이 큰 시장(volatile market)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기를 요구함.
- 프랑스, EC, 스페인 등은 최근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나 투입재 가격(사료 등)이 동반 상승함으로 인해 실제 생산자의 수익이 증대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격상승이 농민의 소득증가로 그대로 이전된다고 기술한 부분의 수정을 요구함.
- 프랑스와 EC는 가격상승으로 인해 기존의 가격 및 생산 지지 정책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산물 순수입 개도국의 경우 국제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격 및 생산 지지수단은 여전히 빈곤감소와 농업발전에 유효할 수 있음을 주장함. 농정목표와 여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업지원 축소를 신흥국가나 개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책권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최근 농산물 수출국들이 도입·강화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들이 농산물 가격변동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국의 농민들이 생산을 증대할 유인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함. 러시아는 수출제한조치로 인해 생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는 근거없는 주장이며, 수입국들의 수입제한조치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함.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등이 수입제한조치와 수출제한조치를 균형적으로 다루는 것을 지지함.
- 일본은 정부의 위험관리수단이 재앙적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보통의 위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술한 부분에 대해서 민간시장의 수준이 국가마다 다르고, 시장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농민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수준을 재앙적 위험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스페인도 수확시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너무 큰 경우를 예로 들면서 위험관리수단의 포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반면, 호주는 자연재해와 같은 재앙적 수준의 위험에만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재해보험이나 농업보험 등의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보통의 위험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원안 유지).
- 프랑스, EC는 공통적인 정책권고 방향으로 가격안정, 식량안보(빈곤감소),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각국의 현행 농업정책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함.
- 캐나다는 식량안보나 가격변동성 이슈는 G20에서 현재 논의중인 의제이므로 확정된 사안처럼 기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OECD의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을 M&E 보고서에 적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함.

○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시장규제 정책수단에 대한 인식

- 호주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곡물의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지만,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재생가능한 연료, 사료, 농식품 시장의 무역자유화를 제한하는 정책수단의 도입을 옹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함.
- 반면에 프랑스는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지속가능한 최적의 정책대안을 모색

하기 위해선 관련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도입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 참고로, 네덜란드는 EU의 농정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한·EU FTA로 인해 대부분의 농산품의 관세가 철폐된다고 기술한 부분은 낙농품, 육류 등의 일부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게 양허안이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Item 6. 농업부문 공급체인을 포괄하는 PSE 측정방안(Measuring Support along the Agricultural Supply Chain: Scoping paper)

- 이 연구제안서는 농업부문 공급체인에 따라 PSE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전후방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긍정적인 지원과 세금부과와 같은 부정적인 지원들이 농업부문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작성됨.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구작업의 유용성과 취지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하면서도 농업외의 타산업 분야의 관련 자료의 획득이 쉽지 않을 것을 우려함. 정부 내에서도 다른 부처의 협조를 얻기도 쉽지 않으며, 민간부문의 협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는 견해를 제시함.
- 일본은 이 작업의 기대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작업 결과 오히려 전후방산업에 영향을 주는 농업부문의 보조금 축소라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도 있음을 우려함.
- 미국은 농업연료에 대한 보조, 농업 및 농촌 관광, Food Stamp 등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들이 모두 새로운 PSE에 포함될 경우, 농업보조금의 과대하게 추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한편, 측정방법으로 산업연관분석이나 가격차분석 등이 유효할 것으로 제안함.

- EC는 현행 PSE, CSE, GSSE 등의 보조측정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특히 작업계획 중에 GSSE 개선 연구가 진행중이며 각국의 지지수단들이 현행 분류체계 내에서 중복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분류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함. 현재 PSE 측정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미국의 Food Stamp와 같은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프랑스는 식품체인을 포함한 새로운 PSE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주는 국내적 파급뿐만 아니라 국제적 효과(교역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한국은 새로운 PSE 지표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높은 농업보조수준에 대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두 개 전후방 산업만을 선택하여 새로운 PSE 지표를 구축하는 실험을 먼저 진행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작업계획과 범위, 방향 등을 결정하는 순서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이러한 pilot or small project 제안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를 표시함.
- 브라질은 이 연구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등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대상 전후방산업을 선택할 때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이번 작업이 현행 PSE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적극적인 부인을 하였으며, 1~2개 산업, 1~2개 국가 등으로 대상범위를 좁혀서 시범사업(pilot project)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담은 새로운 Scoping paper를 11월 APM에서 제출하기로 함. 이와 관련하여 delegation corner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회원국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대상 산업이나 국가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이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함.

□ **Item 7. 지속가능한 개발 및 빈곤감축을 위한 농업의 경제적 중요성(Economic Importance of Agricultur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overty Reduction: Synthesis report)**

- 이 보고서는 2009-2010 농업위 PWB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의 기부로 추진된 작

업의 종합보고서로, 배경보고서와 가나, 에디오피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사례연구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가 된바 있으며, 배경보고서와 사례연구결과를 포괄하는 종합보고서 또한 3월 APM에서 1차 초안이 논의된 바 있음. 회원국들은 이번에 제시된 종합보고서의 수정안을 최종보고서로 공표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작업을 전액 지원한 네델란드는 연구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연구결과가 향후 개도국의 빈곤감축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OECD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함.
- EC는 이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개발위원회를 포함한 OECD 내의 수평적 사업의 일환개도국 개발이슈를 농업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함. 이 보고서는 소득과 빈곤 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개도국의 정책과 빈곤과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보다 유용하다고 판단됨. 또한, 개도국의 경우 예산 제약으로 인해 농업분야에 충분한 재정지원을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으며, 분석대상국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만으로 한정된 것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제한할 수 있음을 우려함.
- 프랑스는 분석방법의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성공적인 개발경험을 겪은 개도국들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추정결과에 대한 확고한 논증이 어렵고, 결론이 편의되게 나타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보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스페인은 M&E 보고서의 Executive Summary에 이 보고서의 연구결과 중에 하나인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감축을 위해선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현금지원(송금)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함.

□ Item 8. 개도국 농정선택(Agricultural Policy Choices in Developing Countries)

- ‘개도국 농정선택’ 연구작업은 2009-2010 농업위 PWB에 채택되었으며, 4개의 관련연구가 공동 수행되었음.
 - ① 농촌소득 향상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 연구, ② 개도국 농업정책 분석모델 (DEVPEM) 개발과 효과분석, ③ 2007-2008 식량위기 이후 개도국들의 국내

농산물시장 안정화정책, ④개도국 투입재 보조사례 연구.

- 4개의 관련연구 중 ①, ③, ④는 이미 2011년 3월 APM에서 공개가 결정되었고, 이번 APM에서는 ②와 4개의 관련연구 모두를 포괄한 종합보고서의 공개 여부를 논의하였으며,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수정 텍스트를 회기중에 제시하였고, 회원국은 이 보고서들의 공표를 결정함.

○ 프랑스는 개도국 농정분석모형(DEVPEM)에서 도입하고 있는 기본 가정과 이론인한 제약 및 결과해석시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여, 다른 정책모형과의 비교, 향후 모형의 개선방향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아울러 이 모형이 정태적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여러 정책수단들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함.

- 사무국은 회기중에 프랑스의 의견을 반영한 ②의 새로운 텍스트를 제시하였음.

○ 호주는 투입재 보조의 효과 및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과도한 정책비용뿐만 아니라 남용될 경우 생산과잉을 유발하여 농산물 가격 및 농업소득 하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함.

○ EC는 개도국의 경우 종합보고서에서 최적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직접적인 소득이전(direct social transfer)이 이론적으로는 가장 시장왜곡적이지 않은 수단이지만, 예산제약으로 인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함. 또한 전반적으로 보고서는 성공한 사례만을 다루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소득증대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함.

○ 프랑스는 종합보고서 제목이 "Agricultural policy choices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Agricultural policies for strengthening incomes in developing countries"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자국의 제안이 반영된 것에 사의를 표함.

- 그림 4에 제시된 지표는 TFP가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음.
- 공공투자는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후방산업과의 연계를 강화시켜 후생증대 효과가 있지만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cost-effective analysis)을 근거로 그 유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 개도국의 소득안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함을 서론

에 기술한 반면, 결론에서는 소득지원정책이나 농업지원정책만을 강조하여, 환경, 지역개발, 지속가능성 등과 관련된 정책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사무국은 각국이 제기한 표현상의 문제들을 수정보완한 텍스트를 회기중에 제시하였고, 회원국들은 이 종합보고서의 공표를 동의함.

□ Item 9. 국제 식량안보(Global Food Security: Scoping paper)

- 사무국은 식량안보에 관한 이번 연구제안서에서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경제적 관점’에만 국한하여 논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음.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무국은 6월 15일까지 서면의견을 취합하여 수정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기로 함.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독일
 - 식량안보를 ‘국가’ 단위로 분석하는 것보다는 ‘지역’ 단위로 분석할 필요 있음.
 - 농산물 공급체인이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내 농업부분(시장)의 다른 산업과의 결합 여부도 고려하여야 함.
- 네델란드
 - 기존 식량안보 관련 선행연구들이 주로 주식(staple food)이나 에너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갈수록 식품영양의 관점에서 식품의 질을 살펴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을 채소, 과일 등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식량안보를 평가해야 함.
- 캐나다
 - 식품유통시스템을 국내 국제 수준에서 검토해야 하며, 양자 및 다자간 식품교역 등을 분석대상으로 포함해야 함.
 -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연계가 필요하며,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권고를 목적으로 작업을 추진하기를 기대함.

○ 아일랜드

- 식량안보 문제를 무역자유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각보다는 수입국,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고려를 통해 수출입국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함.

○ 스위스

- 식량안보는 단순한 경제 또는 시장 분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보고서는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음.
- FAO의 기아지표(hunger index)는 식량안보의 일부분만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를 분석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음. 다른 지표들을 개발 또는 검토해야 함.
- 가격변동성은 이미 다른 작업들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식량안보 이슈와 연결하여 분석할 필요 있음. 또한, 식량안보 문제와 국제교역을 어떻게 연결시켜 분석할 것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계획임.

○ 스웨덴

- FAO, IO 등의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 필요

○ 프랑스

- 식량안보의 정의가 소득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수급, 가격, 교역, 식품의 질 등을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 있음.
- 이 작업의 목적이 정책권고인지 아니면 선행연구 검토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분석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분석방법에 따라서 무역자유화와 식량안보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분석방법의 선택이 중요함
- 규모, 영농형태, 지역 등이 서로 다른 생산자 및 소비자의 소득을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 있음.

○ 스페인

- FAO의 기아지표는 개선될 필요 있음.
- 많은 식량작물은 국내에서 생산(local product)하는 개도국에게는 국내(local) 시장에서의 식량자급수준의 개선이 시장의 통합보다 식량안보에 더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

○ 일본

- 2010-2011 농업위 PWB에서 제시된 식량안보 작업계획과 비교할 때 이 연구 제안서의 내용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고 있어, 연구가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려함. 아울러 사무국은 이 연구제안서 외에도 식량안보 이슈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별도의 작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문의함.
- FAO의 기아지표가 유효한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며, OECD의 가용자원을 감안하면, 이 연구내용과 부합하게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거나 FAO와 협의 하에 기존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 작업의 목적이 단순한 선행연구검토인지 정책권고인지가 불분명하며, 궁극적인 연구방향이 ‘자유무역이 식량안보에 어떻게(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하는 것에 반대하며,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기대함.

○ EC

- 식량안보와 가격변동성, 그리고 가격전이(국내가격과 국제가격)와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 있으며, 식량지원(Food Aid)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함.
- 연구제안서에 제시된 내용들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거나 FAO와 중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연구범위를 재설정 할 필요가 있음. 반면, 아프리카와 관련된 기존연구들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 노르웨이

- 작년 농업위 각료회의 당시 식량안보에 관한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한 바 있는데, 부존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가격변동, 기후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었음. 최근 개도국의 수요 증가, 국제시장에서의 경쟁강화로 국내 부존자원과 자급수준이 식량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 이 연구제안서처럼 경제적 측면으로 편향된 접근방식은 무역과 시장의 기능만 강조하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함.
- FAO의 기아지표의 제한적 성격으로 균형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음.

○ 미국

- 장기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무역자유화가 식량안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2010-2011 농업위 PWB에는 식량안보 관련 작업내용에 재고비축, 소비자 안정망, 비회원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식량안보 정책 연구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할 필요 있음.
- 농산물 가격증가와 빈곤선(poverty line)의 변화를 연계하여 분석하거나, 기아 지표와 에너지가격은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을 제안.
- 미국의 정책평가에 따르면, 국제 식량원조와 대상 특정적인 소비자 원조(Targeting consumer aid)가 매우 유용하였음.
- 국제교역 외에도 국내에서의 식량유통체계를 검토해야 함.

○ 호주

- 2010-2011 농업위 PWB에는 농업과 관련된 환경 또한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식량안보에서 무역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수준은 식량안보의 지표로서 적절하지 않음.

○ 멕시코

- 기존 연구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제시한 새로운 연구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FAO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굳이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음.

○ BIAC

- 식량안보는 농업부문 외에도 다른 부분과 연관 많음. 식품영양, 빈곤, 식량안보 등을 연계하여 분석할 필요 있음. 또한, 기술개발과 정책지원 등을 통한 생산 증가도 분석에 포함해야 함.

○ 브라질

- 국제기구와 공조 필요.
- 가격과 소득 위주의 경제적 분석이 주는 시사점이나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봄. 개도국의 경우, 소득이전이 식량안보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임.
- 실제 개도국에서 농산물 시장은 지역(local) 단위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 국가 단위의 분석보다는 지역의 소득수준, 수급상황, 식품유통체계 등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 있음.

○ 사무국

- FAO 등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방식을 고려하고, 지표의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 가격전이와 식량원도 문제도 검토하고, 아프리카 관련 선행연구도 보완하겠음.
- 연구범위를 경제적 측면에만 국한하는지 여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음.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delegation corner를 통해 지속적인 의견교환을 하겠음.

□ Item 10.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R&D 역할

- 그동안 과학기술산업 사무국을 통해 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2010년에는 OECD 혁신전략이 발표됨. 농업위는 이 연구결과를 농업부문에 접목하고자 이 작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APM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헌검토와 두건의 공개 위탁연구를 그 근거로 작성됨. 두건의 위탁연구는 INRA Agricampus Quest의 Laure Latruffe 박사의 “농업, 농식품부문 경쟁력, 생산성, 효율성”과 UC Davis의 Julian Alston 교수의 “R&D의 혁신, 생산성 기여”임.
- 이 보고서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로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에 따른 농업 R&D와 농업생산성 성장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음. 세계 각국의 농업 R&D 투자 현황과 농업 R&D의 경제적 효과를 정리·제시하여, 농업 R&D 투자 증대의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회원국들은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향후 관련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표하였으며, 사무국은 6월 15일까지 delegation corner를 통하여 서면의견을 취합한 후 수정된 텍스트를 가지고 3주 이후에 공개 절차를 거칠 예정임.

<회원국 발언요지>

○ 독일

- 농업부문 지식체계구축(AKS)을 위한 작업에 앞서 농업분야 R&D와 생산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잘 정리한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보고서임.
- 선진국과 개도국의 농업분야 R&D 투자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비교할 필요 있음.

○ 네델란드

- 자료와 통계의 제약이 따르겠지만, 민간부문의 농업 R&D 투자에 대한 검토도 포함하여 정부주도의 R&D 성과를 상호비교하는 것도 의미있는 분석임.

○ 스페인

- 농가의 영농규모(토지)가 농업생산성과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프랑스

- 농업은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 지표 또한 농업생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 농촌, 지속가능성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가격이 변화(변동성)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R&D 관련 선행연구결과를 참조할 필요 있음.
- 농업분야에서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의 성과가 어떤 구성원에게 주로 돌아갔는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

○ EC

- 국가별 농업 R&D와 생산성의 관계를 다루는 이 작업과, 개별 농가수준에서 농업생산성을 계측할 수 있는 '농가단위 분석을 위한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향후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함.
- 농업부문의 TFP가 다른 분야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농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양의 외부효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미국

- 선행연구들은 농업 R&D에 대한 정의(범위)와 생산성 계측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후속 작업으로는 선진국, 개도국, 신흥경제국, 전환경제국 등에서 사례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국가들을 선정하여,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 R&D가 농업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증연구가 필요함.

□ **Item 11. 혁신 시스템(Innovation Systems: Scoping paper)**

- 2010-2011 농업위 PWB에 의거한 본 연구계획 농업내 R&D 뿐만 아니라 전방위적 혁신시스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시작되었으며, 이 연구계획서에는 농업부문에서 혁신시스템의 개념정의와 향후 연구계획을 소개하고 있음.허
-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은 6월 15일까지 delegation corner를 통하여 제출되며, 사무국은 이를 반영하여 연구를 착수하기로 함. 회원국들은 각국의 농업분야 혁신에 관한 정보를 사무국에 제공하기로 함.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EC
 - 비농업분야에는 혁신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가 많이 존재하며,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네델란드와 캐나다도 유사한 의견을 제시함.
- 호주
 - 농업부문과 식품부문, 그리고 비농업부문의 생산성 격차를 파악하여, 이러한 차이가 농업부문의 혁신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되는지를 검토할 필요 있음.
 - 농업부문에서 개도국의 기술 도입이나 보급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전체 혁신시스템의 설계에 유용함.
 -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있어 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함.
- 노르웨이
 - 새로운 상품의 도입이나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입이 혁신의 중요한 촉매가 되고 있음.
 - 혁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혁신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궁극적인 목적임.
- 프랑스

- 혁신의 정의, 그리고 혁신의 범위 및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함. 농업분야의 혁신은 단지 생산성의 증대뿐만 아니라 환경, 식량안보, 지속성장, 기후변화 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야 함. 독일도 유사한 의견을 개진함.
- 혁신시스템의 구성요소인 혁신주체, 혁신으로 인한 성과와 성과의 보급(확산), 혁신 성과물의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단일한 최적시스템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형별로 효과적인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함.

○ 미국

- 혁신과 농업부문의 성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나타날 수 있음(인과성 분석이 필요). 국가별, 여건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어떻게 상호 비교하는가가 관건일 수 있음.
- 농가단위 통계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이 유용할 수 있음.,

○ 영국

- R&D 관련 각각의 농업분야 정책들은 상이한 혁신 효과를 가져옴.
- 실제 혁신을 경험하고 성과가 우수한 농가들에 한정된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 보편적인 자료와 방법을 활용한 연구도 의미가 있음.

□ **Item 12. 농산품시장의 구조변화: 농산물시장은 더 협소되었는가?(Structural Changes in Agricultural Commodity Markets: Have Agricultural Markets Become Thinner?)**

- 2010년 11월 APM에서는 ‘농산품가격 불안정성의 전개’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11년 3월 APM에서는 농산물시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협소해졌는지 여부와 시장의 협소함과 가격변동성간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의 초안이 논의되었음. 당시 일부 회원국 대표들이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협소함에 초점을 맞춘 초안의 내용 전개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번 APM에는 시장의 협소함과 가격변동성간의 관계는 다루지 않은 채, 단순히 시장의 협소함에 초점을 맞춘 수정 보고서가 제출되었음.
- 회원국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무국은 6월 15일까지 delegation cor-

ner를 통하여 서면의견을 취합한 후 다음 APM에서 공개를 목표로 최종수정된 보고서 제출하기로 함.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독일

- 소비량과 생산량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시장의 협소성 추이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시장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선행되어야 함. 이 보고서에서 다루는 국제시장 보다는 국내시장, 그리고 지역시장의 협소성이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음.

○ EC

- 이 보고서의 내용과 전망보고서의 시장협소성과 가격변동성을 기술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아 상이한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음.
- 시장의 협소성을 다루는 데 국제시장만을 고려하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임. 아울러 개별 농산물에 대한 생산량 분석이 보고서 초반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수급 균형이 지역 내지는 국가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시장을 다루는 것이 필요함.

○ 프랑스

- 시장의 협소성과 관련된 학술적인 선행연구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함. 시장의 협소성을 완화할 있는 무역자유화가 가격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의 결론은 본문의 분석결과(시장의 협소성 추이분석)와 관련이 없는 추측 또는 예단으로 수정이 필요함.
- 국가별 정책 차이가 많으므로 분석 및 권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스위스

- 이 보고서는 시장의 협소성 추이만을 분석하였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가격변

동성과 시장의 협소성을 연관지어 결론내린 것은 부적절함.

○ 한국

- 농산물 시장의 가격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결론에 명시한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음. 무리하게 무역자유화와 연계된 결론을 도출하기 보다는, 이 보고서의 당초 목적대로 9개 품목별 시장 협소성의 장기적 추세를 분석한 것만으로 충분히 유용하다고 판단됨.

○ 네델란드

- 원래 작업계획대로 시장의 협소성과 가격변동성의 관계를 계량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

- 최근의 가격변동은 시장의 협소성보다는 에너지, 금융, 기후변화 등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보고서 분석내용과도 동떨어진 결론(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협소성을 연계)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가격변동성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정책방향은 아닐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미국

-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 작업분야에서 당초에 다루기로 했던 바와 같이, 농산물 시장의 협소성에 대한 분석이 궁극적으로는 가격변동성과 연계되기를 기대함.

○ 영국

- 바이오 연료에 대한 수요의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시장의 협소성에 대한 정의가 변화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 시장의 협소성 자체보다는 이를 만들어 내는 구조가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결론 부분에서 보완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 농산물 시장의 협소성에만 국한된 분석은 농산물 시장의 구조변화를 파악하는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작업에서는 시장의 협소성과 가격변동성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를 희망함.

○ 사무국

- 이 보고서의 본래 취지는 농산물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인 시장의 협소성을 분석하는 것임. 지난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장의 협소성과 가격변동성의)단순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시장의 협소성 추이만을 분석하자는 회원국들의 견해를 따름.
- 브라질이 설명한 바와 같이, 결론 부분에서의 가격변동성과 시장의 협소성에 대한 기술은 시장의 협소성 자체보다는 농산물시장의 구조변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문구를 수정하도록 하겠음.

7. OECD 제65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 회의결과

□ 핵심요지

○ 식품수입규제 설계실행의 최적방안(지역무역협정 사례): 경과보고서

- 전기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임. 캐나다는 연구대상에서 원산지규정을 제외하고, SPS(위생 및 식물검역조치)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애) 분야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함. 미국은 지역무역협정의 규정들이 WTO의 SPS 및 TBT 규정과 일치하는지를 우선 분석하자고 제안함. 사무국은 질의서를 통해 대상자료를 수집할 예정임.

○ 수출제한 연구계획서

- 수출국들의 수출제한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 및 향후 작업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미국), 구체적 사례분석 및 수출제한의 배경 및 원인파악이 중요하다는 의견(프랑스, 일본, 스페인, 스위스)

이 제기됨. 사무국은 무역위원회 연구자료를 참고하겠으며, WTO 통보내용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함.

- 수출제한 연구계획서는 수입국인 아국의 입장에서 중요한 작업분야이므로 향후 진행과정 논의에 충실하게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제별 주요내용>

□ Item 3. 식품수입 관련 규정의 설계와 실행을 위한 최적 방안 모색 - 지역무역협정 사례(Best practice For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food-import related regulations experiences from some Regional trade agreements: Progress report)

- 지난해 11월 JWPAT에서는 ‘향후 비관세조치(NTM) 작업 제안 [TAD/TC/CA/WP(2010)4]’을 검토한 결과, 회원국의 서면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한 새로운 연구계획서(scoping paper)를 작성하고, 각 회원국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포함한 코멘트를 사무국에 제시하는 절차를 거쳐 이 연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 이번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는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새로운 연구계획에 따라 그 동안 진행되어온 작업내용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계획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회원국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사무국은 6월 15일까지 delegation corner를 통하여 서면의견을 취합한 후 이를 반영하여 계획된 연구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함.

<회원국 및 사무국 발언요지>

- 캐나다
 - 농식품 교역의 비관세조치에 관한 연구작업은 실질적인 교역비용을 줄이고 무역왜곡적인 규정 및 절차 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함.
 - 현재 농업외 분야에서 활발히 논의중이며,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원산지 규정’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SPS와 TBT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를 제안함.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를 지지하였음.

- WTO 분쟁해결 패널의 사례를 분석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프랑스

- ‘best practice’라는 제목이 마치 하나의 최적 규정을 도출하고 이를 모두에게 강요하는 뉘앙스를 주고 있음.
- NTM과 관련된 규정과 절차에 대한 서술적인 분석 위주로 진행되기보다는 경제 분석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함.
- 지난번에 사례연구로 포함하기로 했던 EU-MERCOS FTA는 결국 제외된 것으로 결론이 났는지를 문의함.

○ 스위스

- EU-SWISS 농업협정은 1999년에 체결되었으며, 2002년부터 발효되고 있음.

○ 미국

- WTO의 SPS 및 TBT 규정을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양자 및 다자) 지역무역협정은 엄밀한 의미에서 FTA라고 할 수 없음. 대상 FTA의 NTM 규정들이 WTO의 SPS 및 TBT 규정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각 NTM 규정들을 우선 평가하여야 함. 그리고 관련 규정들이 만들어지거나 운용되는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삼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무역제한조치로 간주해야 함. 예를 들어 NGO 및 동물복지 주창자들이 NTM 규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과학적 기준과 상관없는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사무국

- ‘원산지 규정’ 관련 질의를 설문지 문항에서 제외하겠음.
- 제목이 주는 뉘앙스처럼 단일한 최적안을 모색하려는 의도는 없으며, 상이한 여건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는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겠음.
- EU-MERCOS FTA를 사례에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브라질이 아직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 Item 5. 수출제한에 관한 연구계획서(Scoping Paper on Export Restrictions)

- 2011~12 농업위의 PWB에는 ‘농산물 무역자유화’ 작업결과분야 내에 수출제한에 대한 작업이 포함되어 있음. 이번 연구계획서(scoping paper)는 분석대상 농산품

의 수출제한에 관한 기초자료의 구축 및 향후 작업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취합하고, 앞으로의 작업진행을 논의할 목적으로 제출되었음.

○ 프랑스

- WTO에 통보한 수출제한 관련 자료(통계)를 활용할 경우 자료 수집과 구축에 국한된 이번 작업이 상당기간 단축될 수 있음. 자료수집 이후 수출제한의 파급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 더 큰 관심이 있음. 스페인, 일본, 스위스 등의 동의 함.
- 이를 위해서는 먼저 WTO에 통보된 수출제한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항목, 작성규정, 통보 규정 등)와 통보 과정(순서, 담당기관, 검증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필요한 통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효율적임. 따라서 WTO에 통보한 수출제한 자료를 개괄할 수 있는 표를 연구제안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미국

- 수출제한 관련 자료를 구축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기 보다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유용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향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됨.
- differential export taxes도 수출제한조치에 포함하여야 함.

○ 일본

- trigger price를 운용하는 수출제한조치의 경우 해당국가의 가격과 물량 등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함.

○ 사무국(Ken 국장)

- G20의 가격변동성과 관련된 논의전개를 보면, 최근 가격변동성의 주요 요인으로 수출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출국들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수입 제한조치(관세, 쿼터, NTM) 또한 장기적으로 가격변동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두 요인들을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
- OECD에서의 이에 대한 논의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출제한과 관련된 연구작업을 추진할 계획임.

< 붙임 >

Written comment for M&A Report(Korea)

<Concerning PART2>

In page 63 in the Box, the third bullet, the last sentence seems to be wrong. My suggestion for that is 'Further effort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targeting.

Para 140 2nd line,

'To address these problems.....income risks of farm households.'

Should be changed as follows;

'To address these problems it's being in consideration to reorganizethe various direct programmes into two major programmes in the long run: Direct Payment for Public Interests and Direct Payment for Managerial Stabilization. As a process, Korean government is now doing a feasibility test for Direct Payment for Farm Income Stabilization which is a program to address managerial risk at the farm level by subsidizing some proportion of the gap between the annual farm income and the target farm income.'

Para 148 8th line ' The government is also....., outbreak of the disease' should be deleted since regular vaccinations for all livestock is not decided.

Para 149 the numeric expression for TRQ weights, 225000 tonnes and 408000 tonnes should be revised as '225575' and '408700' respectively, in terms of consistency of unit, with the number 20347 tonnes and 327311 tonnes.

Para 150 2nd line

'In late 2010, Korea concluded FTA with the European Union as well as Peru and the agreements are in the process of parliamentary ratification' should be rephrased as

'Korea has recently made parliamentary ratification for FTA with EU, and has the agreements with Peru in the process of parliamentary ratification.'

Para 151 the last sentence, 'Negotiations are also due to commence with Japan

and China as well as feasibility studies of new FTAs with Russia, Israel and Vietnam'

should be revised as

'Negotiations with other economies are also in consideration.'

<Concerning PART 1>

Para 47 from 1st line through 4th line, 'In Korea various direct.....
.....is expected to start in 2011'

Should be revised as

'In Korea direct payment programme has started to be implemented from early 90's in terms of supplementing existing market price support measures. And the country is now doing feasibility test for farm income stabilization program which will be implemented in a few years. The program is to address managerial risk at the farm level by subsidizing the gap when farm income is lower than the target income. After finishing the feasibility test, the program will be implemented in wide range.'

Para 57 in Korea, the direct payments including the five direct payment mentioned in the para has already been started earlier than 2009. So the Korea part in the para should be deleted.

And some other paragraphs in PART1 if any, should be revised reflecting points suggested for PART2 above.